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31

2012년 6월 22일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6월 12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(2012년 6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)

가.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여성의 직업훈련 및 생활문화 교육시설로서,

나.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다. 주요위탁 내용

○ 위탁기간 : 3년(2012.10.15 ~ 2015.10.14)

○ 위탁업무 :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

○ 소요예산 : 812,093천원 (2012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(1) 동의안 제출 배경

○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여성의 직업훈련 및 생활문화 교육시설로서,
위탁기간(2009.10.15 ~ 2012.10.14)이 금년 10월 중순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, 향후에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(2)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검토

○ 여성발전센터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능력을 개발하고, 여성 친화적 틈새직업을 개발 및 창업·취업을 지원하며, 저소득 가정 및 저소득 여성의 자립지원,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의식향상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그래서 여성의 잠재력을 계발해 사회의 각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.

- 특히 센터가 단순히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내용에서 벗어나, 최근에는 지역의 특색과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강좌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.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강좌 수료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면서 취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강좌가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- 서울시가 센터를 직영하는 것보다, 여성의 직업훈련 및 생활문화 교육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,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함.

(3) 기타사항

○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, 전문성 제고,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 이라는 측면에서
향후 위탁계약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.

-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가 형평성 있게 같이 명시되어야 하며, 예를 들면 위탁자의 의무사항으로는 '인건비, 관리비, 사업비 등 예산지원', '수탁기관의 인사관리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', '시설 개보수 등의 시설투자', '안전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의무'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선정과 계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없음.

5. **토론요지** : 없음.

6. **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**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**심사결과** : 「원안가결」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**소수의견의 요지** : 없음.

9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음.

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831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여성의 직업훈련 및 생활문화 교육시설로서,

○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○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

○ 소 재 지 :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70-2

○ 시설규모 : 대지 2,085㎡, 건물 3,926m²(지하1층 지상4층)

○ 설립일자 : 1986. 12. 10.

○ 근거법령 :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

나. 주요위탁 내용

○ 위탁기간 : 3년(2012.10.15 ~ 2015.10.14)

○ 위탁업무 :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

○ 소요예산 : 812,093천원 (2012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(2012. 6.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3차 : 2009.10.15 ~ 2012.10.14
  (3년,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)
- 2차 : 2006.10.15 ~ 2009.10.14
  (3년,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)
- 1차 : 2003.10.15 ~ 2006.10.14
  (3년,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市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

○ 여성의 직업훈련 및 생활문화 교육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-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기타사항

○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(2012. 6.)